

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

개인 사업자

-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2부
- 상품권 견본 (앞면, 뒷면)
-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개인 인감증명서 [발급일 3개월 이내]
-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, 대표자 개인인감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법인 사업자

- 상품권 신용판매 특약서 2부
- 상품권 견본 (앞면, 뒷면)
-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법인 인감증명서 [발급일 3개월 이내]
- 법인 등기부등본 [발급일 3개월 이내]
-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하나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카드사”라 한다)와 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한다)은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용어의 정의)

- “상품권”이라 함은 “가맹점”이 발행하거나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한다.
- “카드의 회원”이라 함은 “카드사” 및 “카드사”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(이하 총칭하여 “카드”라 한다.) 회원과 해외 브랜드(VISA, Mastercard, JCB카드 등) 회원을 말한다.
- “가맹점의 매장”이라 함은 이 특약을 체결한 “가맹점”의 매장으로 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카드(제휴카드 포함)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상품권(선불카드 포함)의 신용판매 매출 분에 한한다.

제3조(영업행위 통보)

- “가맹점”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또는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고 “카드사”의 승인을 얻은 후 판매하여야 하며, “카드사”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고 위탁 판매 계약해지에 따른 상품권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“카드사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4조(상품권의 판매)
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상품권(선불카드 포함)의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 특약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취소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 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월간판매한도)

이 특약에 의한 “가맹점”의 상품권 월간 판매 한도액은 원으로 한다.

제6조(특약 보증)

- 이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“가맹점”은 소정의 특약 보증금을 “카드사”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특약 보증 종류는 현금, 지급보류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. (다만, 현금 담보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다)
- 특약 보증금 설정
 - 특약 보증 종류:
 - 특약 보증 금액:
 -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(지급보류)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증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, 그 공제된 금액(즉, 지급보류된 금액) 자체를 특약보증금으로 한다.
 -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시 “카드사”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.
- 제3항에서 정한 특약보증금은 “가맹점”의 매출액 변동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, 가맹점 앞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“카드사”는 “가맹점”의 요청으로 특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. (해외카드 매입내역은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,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) 다만,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(가)압류에 의한 압류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.

제7조(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)

개인 신용카드회원의 “가맹점”을 포함한 상품권 업종 전체에서의 월간(매월 1일에서 말일 까지) 이용한도는 100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고객 문의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조(손해배상)

일방이 이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10조(유효기간)

이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11조(특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은 이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때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“카드사”는 “가맹점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이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“카드사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주요자산에 (가)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 -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“카드사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“카드사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- 제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
 -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“카드사”가 판단하는 경우
 -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현금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제4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“카드사”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 해지가 아닌 “카드사”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,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,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특약의 해석)

이 특약은 “카드사”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카드사”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(관할법원)

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가맹점”의 주소지 또는 “카드사”의 본·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가맹점”과 “카드사”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[카드사]

주소 : 서울 중구 을지로66

상호 : 하나카드주식회사

대표이사 (인)

대리인 (인)

[가맹점]

주소 :

상호 :

대표이사 (인)

대표이사 (인)

하나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카드사”라 한다)와 [] 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한다)은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권의 신용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용어의 정의)

- “상품권”이라 함은 “가맹점”이 발행하거나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말한다.
- “카드의 회원”이라 함은 “카드사” 및 “카드사”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(이하 총칭하여 “카드”라 한다.) 회원과 해외 브랜드(VISA, Mastercard, JCB카드 등) 회원을 말한다.
- “가맹점의 매장”이라 함은 이 특약을 체결한 “가맹점”의 매장으로 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카드(제휴카드 포함)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상품권(선불카드 포함)의 신용판매 매출 분에 한한다.

제3조(영업행위 통보)

- “가맹점”은 상품권의 발행 여부와 발행 또는 판매하는 상품권의 종류를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고 “카드사”의 승인을 얻은 후 판매하여야 하며, “카드사”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고 위탁 판매 계약해지에 따른 상품권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즉시 “카드사”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“카드사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4조(상품권의 판매)
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상품권(선불카드 포함)의 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 특약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이 “가맹점”의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매출 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취소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은 “카드사”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이 특약에 의한 가맹점 번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월간판매한도)

이 특약에 의한 “가맹점”의 상품권 월간 판매 한도액은 [] 원으로 한다.

제6조(특약 보증)

- 이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“가맹점”은 소정의 특약 보증금을 “카드사”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특약 보증 종류는 현금, 지급보류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. (다만, 현금 담보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다)
- 특약 보증금 설정
 - 특약 보증 종류:
 - 특약 보증 금액:
 -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(지급보류)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증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, 그 공제된 금액(즉, 지급보류된 금액) 자체를 특약보증금으로 한다.
 -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 시 “카드사”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.
- 제3항에서 정한 특약보증금은 “가맹점”의 매출액 변동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, 가맹점 앞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“카드사”는 “가맹점”의 요청으로 특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. (해외카드 매입내역은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,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) 다만,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(가)압류에 의한 압류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.

제7조(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구입한도)

개인 신용카드회원의 “가맹점”을 포함한 상품권 업종 전체에서의 월간(매월 1일에서 말일 까지) 이용한도는 100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고객 문의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조(손해배상)

일방이 이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10조(유효기간)

이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11조(특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은 이 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때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“카드사”는 “가맹점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이 특약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“카드사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주요자산에 (가)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 -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“카드사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-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“카드사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- 제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
 -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한 것으로 “카드사”가 판단하는 경우
 -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현금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제4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“카드사”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 해지가 아닌 “카드사”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,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,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특약의 해석)

이 특약은 “카드사”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카드사”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“카드사”와 “가맹점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(관할법원)

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가맹점”의 주소지 또는 “카드사”의 본·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가맹점”과 “카드사”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[카드사]

주소 : 서울 중구 을지로66

상호 : 하나카드주식회사

대표이사 (인)

대리인 (인)

[가맹점]

주소 :

상호 :

대표이사 (인)

대표이사 (인)